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발행일 2022. 4. 29.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 바뀌어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목차

목차	2
요약	3
배경과 취지	4
현황과 문제점	5
성립 국민동의청원의 국회 계류 현황	5
[표1]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5
국회의 성립 청원 절차상 문제점	8
국회법 개정 관련 주요 국회 논의 현황	9
참여연대 검토 의견	10
21대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및 주요내용	10
[표2] 21대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및 주요내용	10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11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제5항 및 제6항	12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제4항	13
참여연대 의견 요지	14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음. 국회법 단서조항을 빌미로 심사기한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고 있기 때문임. 21대 국회에 관련 국회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운영위는 법안 논의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참여연대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주민의원 소개로 2021년 11월 입법청원했지만 역시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 이에 참여연대는 최근까지 제출된 청원 심사의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6건을 검토하고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과 법안처리 촉구를 담은 <국민동의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함.
- 2022년 4월 27일 기준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30건으로, 그 중 2건은 본회의불부, 1건은 대안반영폐기 되었음. 그러나 나머지 27건 중 대부분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2022. 5. 29.) 또는 21대 국회 임기만료일(2024. 5. 29)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며 심사 자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음. 성립요건을 10만에서 5만으로 완화시켰지만,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는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는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직접 국회 논의에 반영되었을 때 느끼는 효능감도 미미해져 국민동의청원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착되기 힘들 것임.
- 참여연대의 입법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함(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제59조의2 단서조항 삭제). 자동 상정 예외 대상에 청원안을 삭제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함. 제125조 제5항에 따라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삭제해도 무방함.
 - 둘째,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해야 함(국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개정). 청원 심사시 국회가 제안자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또한 청원 심사 과정을 공개하여 청원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 모두 청원 심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함.
- 청원제도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조속히 청원 심사의 무기한 연장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임.

-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2022년 4월 27일 기준 총 30건으로, 그 중 2건은 본회의불부의, 1건은 대안반영폐기 결정이 되었지만, 나머지 27건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 2022년 4월 27일 기준, 21대 국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최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국민동의청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연국외 100,000인)>으로 659일째에 달함.
- 이외에도 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소개청원은 총 52건에 달하지만, 그 중 6건만이 처리되었을 뿐 나머지 46건의 의원소개청원 또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임.
-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현행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음. 그러나 성립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국회가 청원 심사를 미루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는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직접 국회 논의에 반영되었을 때 느끼는 효능감도 미미해져 국민동의청원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착되기 힘들 것임.
-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동의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의견서>를 제출함.

현황과 문제점

1. 성립 국민동의청원의 국회 계류 현황

- 2022년 4월 27일 기준,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30건임. 그 중 2건은 본회의불부의, 1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음. 나머지 27건은 각 상임위에 계류 상태임.¹
- 2022년 4월 27일 기준, 최장기간 계류 상태인 청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연국외 100,000인)>으로 659일째임. 반대 의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두나외 100,000인)> 또한 국회에 접수되어 317일째 계류되어 있음. 또한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석운외 100,000인)>은 342일째,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최영심외 100,000인)>은 322일째 계류 중임.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유원기외 100,000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외 100,000인),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외 100,000인)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사안에 대한 청원도 계류 상태임.
- 많은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사회적 현안이나 삶과 연관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회는 사회적 갈등과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음. 국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결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입법적 판단을 내려야 함.

[표1]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청원번호	청원 제목	국회 접수일 (기준)	계류기간 (22. 4. 27. 기준)	현상태	국회처분 (연장기간)
2100080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최광현외	2022-04-07	20일	법사위 계류	

¹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50,000인)

2100079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전윤성외 50,000인)	2022-03-21	37일	국회운영위 계류	
2100078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장해욱외 50,000인)	2022-03-16	42일	법사위 계류	
2100077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신기훈외 50,000인)	2022-02-10	76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계류	
2100074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최영찬외 50,000인)	2022-01-20	97일	산자위 계류	
2100073	돌봄의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재연외 50,000인)	2022-01-19	98일	보건복지위 계류	
2100072	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박흥식외 50,000인)	2022-01-19	98일	농수산위 계류	
2100071	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한나외 100,000인)	2022-01-06	111일	정치개혁 특별위 계류	
2100067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현지현외 100,000인)	2021-10-25	184일	복지위 계류	확인 불가
2100065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박은희외 100,000인)	2021-09-23	216일	법사위 계류 (2021-11-16, 소위직접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64	故손○○군 사건 CCTV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추구에 관한 청원(김보나외 100,000인)	2021-09-12	227일	법사위 계류	2022년 12월 31일까지 심사 연장
2100059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경희외 100,000인)	2021-08-16	254일	여가위 계류 (2021-08-17, 소위직접회부)	확인 불가
2100050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희영외 100,000인)	2021-06-22	309일	교육위 계류 (2021-11-23, 소위상정)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49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길원평외 100,000인)	2021-06-22	309일	법사위 계류 (2021-07-21, 소위직접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48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두나외 100,000인)	2021-06-14	317일	법사위 계류 (2021-07-21, 소위직접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47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최영심외 100,000인)	2021-06-09	322일	법사위 계류 (2021-07-22, 소위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46	낙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유원기외 100,000인)	2021-05-25	337일	환노위 계류	확인 불가
2100043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석운외 100,000인)	2021-05-20	342일	법사위 계류 (2021-07-22, 소위원회부)	확인 불가
2100042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원준외 100,000인)	2021-05-14	348일	국방위 계류 (2021-08-20, 소위원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26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외 100,000인)	2020-12-26	487일	보건복지위 계류 (2021-02-17, 소위원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21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외 100,000인)	2020-11-15	528일	교육위 계류 (2021-11-23, 소위상정)	확인 불가
2100020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전호일외 100,000인)	2020-11-04	539일	행안위 계류 (2021-02-18, 소위원회부)	확인 불가
2100019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노세영외 100,000인)	2020-11-03	540일	보건복지위 계류 (2021-02-17, 소위원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17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주연외 100,000인)	2020-10-31	543일	행안위 계류 (2021-02-17, 소위원회부)	2022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11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외 100,000인)	2020-09-19	39일	환경노동위 계류 (2020-11-12 소위원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10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외 100,000인)	2020-08-15	108일	보건복지위 계류 (2020-11-17 청원심사소위원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100003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연국외 100,000인)	2020-07-07	585일	법사위 계류 (2020-11-16 소위직접회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연장

2. 국회의 청원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

1) 국민동의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가능

- 청원인이 국민동의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됨. ① 국민동의청원 등록 후 공개를 위해 30일 안에 100명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며, ② 국회 민원지원센터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7일, ③ 수리된 후 공개되어 30일 안에 50,000명의 동의 서명을 모은 뒤, ④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⑤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⑥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5만명이라는 청원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 국회는 15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 국회법 제125조 제6항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90일+60일)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충분히 하지도 않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심사 기간을 국회 전반기 만료일인 2022년 5월 29일까지 추가 연장했거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²

2)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의 진술권 미보장

- 현행 국회법 제125조 제4항은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의원이 청원인과 직접 소통해 청원 취지와 배경을 숙지하고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에만 청원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² 아울러 국회의 심사기간 연장이 청원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임.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 청원인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고지하는 공문을 발송함. 그러나 청원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심사 기한 연장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나마 국회회의록시스템을 직접 찾아보아도 회의록에 제대로 언급되지 않거나, 회의록 부속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국회가 청원인의 진술을 듣지 않는다면 청원 취지를 왜곡해 입법 논의를 할 우려도 존재함.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심사시 청원인의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청원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청원 취지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함.

3. 국회법 개정 관련 주요 국회 논의 현황

- 2021년 11월 23일,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여 명의 시민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함.
-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현행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함.
- 21대 국회에서 청원 심사 기한을 특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단 한 건도 소위 심사에 이르지 못함. 2022년 4월 25일 현재까지도 국회운영위원회는 심사 기한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진행된 바 없음.

참여연대 검토 의견

1. 21대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및 주요내용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독소조항인 청원 심사 기한을 특정(제59조의2 및 제125조제6항 등)하거나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제125조제4항)하는 등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총 6건임.

[표2] 21대 국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법안명(대표발의)	주요내용	심사 상황 (2022. 4. 28 기준)
[21004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청원 심사기간을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2020-12-04 국회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 위 상정
[21022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제125조 제6항)를 삭제하고, 청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25조 제7항 신설).	2020-12-04 국회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 위 상정
[21064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4인)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안 제125조제4항 및 제6항).	2021-02-24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상정/소위원회부
[21121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함. 의안과 청원의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2021-09-15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소위원회
[2113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 심사기간을 제한함(안 제125조제6항 단서 신설).	2021-12-16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회부
[21152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2022-04-18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회부

1)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59조의2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에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 상정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 민형배의원안의 경우, 자동 상정 안건에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해 전체회의 상정 후 30일이 지나면 소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수 있도록 했음.
- 박주민의원안의 경우, 자동 상정 예외 대상에서 청원을 제외함.
- **참여연대는 제59조의2 단서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 민형배·박주민의원안 모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를 연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안을 통해 단서조항의 삭제를 주장한 바 있음.
- ➔ 법안 처리 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논의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

2) 제125조(청원 심사 · 보고 등) 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청원 심사 · 보고 등)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현행 제125조제6항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진성준의원안은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의 법적 근거였던 제125조 제6항을 삭제함.
- 강민정의원안의 경우 국민동의청원에 한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 심사기간을 제한하였음. 박주민의원안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심사 기한을 특정함.
- 문진석의원안의 경우,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신동근의원안은 청원 심사기간을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 **참여연대는 제125조 제6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 진성준의원안은 제125조 제6항 삭제를 담은 반면, 강민정, 박주민, 문진석 의원안들의 경우 대체로 한차례에 한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한은 90일에서 최대 6개월로 다양함. 단 문진석의원안은 연장하는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음.
- ➔ 국회 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상시국회를 실시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고려해 연장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할 지 의문임. 이미 제125조 제5항에서 한차례 심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125조 제6항은 삭제해야 함.
- ➔ 국회법 제125조 제6항은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추가연장 기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명확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시기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입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 10만 또는 5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국회가 지체 없이 논의해야 함. 이에 제125조 제6항의 완전 삭제가 필요함.
- ➔ 아울러 신동근의원안처럼 청원 심사기간 자체를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연장기한을 60일에서 30일 내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

3)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제4항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도 제10조제1항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현행 제125조 제4항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항은 소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규정함.
 - 박주민의원안, 진성준의원안은 국민동의청원 제안자가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장함.
 - 문진석의원안은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 진술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국회법 제125조 제4항을 신설하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청원인의 진술권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청원 입법의 목적을 보다 높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원인의 진술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의 취지 진술을 통해 국회가 왜곡 없이 이해하고 적극 반영하여 심사해야 하기 때문임.
- ➔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원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원심사소위조차 거의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임. 이에 청원인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 방송 중계를 통해 청원인 뿐 아니라 청원에 참여한 시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논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2. 참여연대 의견 요지

- 무기한 심사 연장 가능토록 하는 단서조항 완전 폐지 (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제59조의2 단서조항 삭제)
-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 (국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개정)
- 국회는 조속히 청원 심사의 무기한 연장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애 나서야 할 것 것임.

**국민동의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발행일 2022. 4. 29.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유성진 교수)

담당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